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건인사업포함)과 시민회관, 도서관 등 경영수익사업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 성격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 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 제4조)

나.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안 제7조)

다. 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안 제13조)

-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 사업

라.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안 제20조)

마.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안 제24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자본금”이라 한다)은 20억원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 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이사) ①이사는 4인이상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와 여건을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사 업

제13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14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5조(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할 수 있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 5 장 감 독

제20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공단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2조

第2條 (適用範圍) ①이 법은 다음各號에 해당하는事業(그에附帶되는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事業으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는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사업중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이 經營하는 事業에 대하여 適用한다. <改正 92·12·8>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가스事業
6. 地方道路事業
7. 下水道事業
8. 清掃·衛生事業
9. 住宅事業
10. 醫療事業
11. 埋葬 및 墓地등 事業
12. 駐車場事業
13. 土地開發事業
14. 市場事業
15. 觀光事業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改正 92·12·8>

1. 屠畜場事業
2. 通運事業(渡船事業을 포함한다)
3. 自動車터미널事業
4. 體育場事業
5. 文化藝術事業(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
6. 公園事業

7. 經常經費의 5割이상을 經常收入으로 充당할 수 있는 다음 各目에 해당하는 사업

가.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住民의 福利를 增進하거나 地域開發 또는 地域經濟活性化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

第49條 (設立)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1.5.31, 92.12.8>

② 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③ 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項의 條例에 公社의 定款을 첨부하여 內務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5.31, 92.12.8>

[本條新設 80.1.4]

지방공기업법 제53조

第53條 (出資) ① 公社의 資本金은 地方自治團體가 全額을 現金 또는 現物로 出資한다. <改正 92.12.8>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

第58條 (任員) ①公社의 社長·副社長을 포함한 理事 若干人과 監事를 두며, 理事 및 監事の 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社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하되, 市·道가 設立한 公社의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市·郡 및 自治區가 設立한 公社의 경우에는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醫療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公社의 社長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③副社長·理事 및 監事は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한다. <改正 92.12.8>

(本條新設 80.1.4)

第59條 (任期 및 職務) ①社長·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期가 만료된 任員으로 하여금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지방공기업법 제63조

第63條 (職員의 任·免)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9조

第69條 (餘裕金の 運用) 公社는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는 외에는 業務上 餘裕金を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地方債의 取得

2.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에의 預入

(本條新設 80.1.4)

지방공기업법 제76조

第76條 (設立·運營)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2.12.8>

② 公團의 設立·運營에 관하여는 第49條 내지 第52條·第53條第1項·第56條 내지 第66條의2·第68條 내지 第74條·第75條의2 및 第75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公社”는 “公團”으로, “社長”은 “理事長”으로, “副社長”은 “副理事長”으로, “社債”는 “公團債”로 본다. <改正 92.12.8>

[本條新設 80.1.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56조 (경영평가)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방법 및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되,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4.10]

지방재정법 제15조

第15條 (出資의 제한) ①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團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團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會員으로 하는 公益法人외의 團體에 대하여는 出資를 할 수 없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公企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31>

②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1.12.31>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 분 사업명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산물도매시장 사업포함)	5인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	5인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4두, 돼지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 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	5인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 장포함)	10인이상	관리건물면적 연건평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 획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식산개 발포함)	5인이상	1일평균 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인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	5인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	10인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 수 1만 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이상	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